

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764
----------	-----

2023년 7월 5일
행정자치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자 : 윤영희 의원(찬성의원 46명)
- 나. 제안일 : 2023년 5월 30일
- 다. 회부일 : 2023년 6월 5일
- 라. 상정일 : 제319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
2023년 7월 3일 상정·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윤영희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북한이탈주민 중 청년의 경우 학업과 생계를 병행하는 문제, 정체성과 취업과 같은 여러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나, 현행 조례상 특별히 배려·지원하도록 하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.
- 이에 상위법인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서울시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할 때

특별히 배려해야 하는 대상에 “청년”을 추가하여 청년인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시책을 마련할 때 특별히 배려해야 하는 대상에 청년을 추가함.(안 제3조제2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

나. 입법예고(2023. 6. 8. ~ 6. 12.) 결과 : 의견 없음.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(수석전문위원 김태한)

-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상 특별히 배려·지원해야 하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‘청년’을 대상에 추가하려는 것임.(안 제3조제2항)

현행	개정안
<p>제3조(시장 등의 책무) ① 서울특별시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,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는 경우 아동·<u>청소년</u>·여성·노인·장애인 등에 대하여 특별히 배려·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p>	<p>제3조(시장 등의 책무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<u>청소년</u>· <u>청년</u>----- ----- -----.</p>

- 동 개정안은 북한이탈주민 중 청년의 경우 학업과 생계의 병행, 취업 문제 등을 겪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, 특별히 배려·지원해야 하는 대상에 ‘청년’을 추가하여 근거 규정을 보완한다는 취지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.

○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의2¹⁾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제2항에 따르면, 지방자치단체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하는 경우 특별히 배려·지원하는 대상을 ‘아동·청소년·청년·여성·노인·장애인 등’으로 규정하여 ‘청년’을 포함하고 있는 바, 상위 법령에도 부합한다고 하겠음.

※ 정부에서는 2020년 2월 4일 제정된 「청년기본법」의 입법취지에 맞추어 2023년 3월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의2를 개정하면서 특별배려 대상에 ‘청년’을 추가하여 청년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제공을 강화하고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있음.

○ 특히, 취업난 및 주거 불안정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특별배려 대상에 포함하여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은 타당한 입법조치인 것으로 사료됨.

※ 행정국은 상위법인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 개정에 따라 조례상 보호대상자로 청년이 추가되어 기존 “청소년”이 “청소년·청년”으로 변경되는 부분으로, 상위법령의 개정 취지에 부합하여 조례 개정에도 동의한다는 의견임.

○ 또한, 2023년 3월 행정국에서 개최한 ‘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 소통 간담회’에서도 주요 건의사항 중 하나로 청년 취업, 병역관련 사항들이 논의된 바, 청년의 자립은 가족에 대한 파급효과를 감안하여, 중점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.

1)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의2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

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자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보호대상자의 보호·교육·취업·주거·의료 및 생활보호 등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하는 경우 아동·청소년·청년·여성·노인·장애인 등에 대하여 특별히 배려·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[청년 관련 주요 건의사항]

- 서울시 산하기관에 북한이탈주민 특채 요청
- 북한이탈주민 대학생들의 대기업 인턴근무(방학기간) 및 취직 요청(시범적으로 1~2명)
- 제3국 자녀의 군 문제 대책 필요
 - 국적 취득시 즉시 군입대로 한국어도 미숙한 채 입대하여 부적응 발생

- 다만, 현행 청소년의 범위는 「청소년 기본법」에 따라 9세~24세, 청년의 범위는 「청년기본법」은 '19세 이상 34세 이하'로, 「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」에서는 '19세 이상 39세 이하'로 하고 있는 바, 청년의 지원범위를 명확히 하는 방안도 살펴보아야 할 것임.
- 또한, 법령 개정에 따라 북한 이탈 청년들이 피부에 와닿는 실효적인 사업 집행의 노력과 생색내기용 사업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는 행정국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.
- 한편, 북한이탈주민 특별배려 대상 지원 관련 현황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제출되지 않은 바, 행정국은 구체적인 특별배려 대상자 수 및 대상자별 지원사항 등 현황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보이며,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 아동, 청소년, 여성 등 특별배려 대상에 대한 대상별 지원 현황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.

6. 토 론 요 지 : 없 음.

7. 심 사 결 과 : 원안 가결(재석위원 7명, 전원 찬성).

8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.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.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청소년”을 “청소년·청년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시장 등의 책무) ① 서울특별시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,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는 경우 아동·<u>청소년</u>·여성·노인·장애인 등에 대하여 특별히 배려·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p>	<p>제3조(시장 등의 책무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<u>청소년</u>· <u>청년</u>----- ----- -----.</p>